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2. 16(금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84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사회·경제·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‘은둔형 외톨이’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‘은둔형 외톨이’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, ‘은둔형 외톨이’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비밀누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바.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, 제22조, 제23조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 - 은둔형 외톨이는 상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정의는 없음.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‘히키코모리’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거치면서 200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
- 2)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 -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현황 및 정보에 관한 관련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볼 때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
- 3)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4) 비밀누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5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6)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다. 검토의견

- 은둔형외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때문이라고 보기에 사회 발생적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.
-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사회보장기본법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22조(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·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.

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0. 5. 19.] [법률 제17280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